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강광주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8-721
----------	-------

발의연월일 : 2021.10.6.  
발의자 : 강광주 의원 외 11명

## 1. 개정이유

-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원의 원격 출석·발언·표결과 관계공무원의 원격 출석 및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을 경우 의원의 비대면 원격 출석·발언·표결과 관계공무원의 원격 출석 및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4. 예산수반사항 :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현행규칙 : 붙임3

6. 관계법령 : 붙임4

[붙임 1]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 ①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제3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제76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의원	장광주 의원 대표발의 (행정번호 3573)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b>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b> ①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②제3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③제76조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p> <p>④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p>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3제1항 중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을 한”을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육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② ~ ④ (생략)</p>	<p>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 -----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 ② ~ ④ (현행과 같음)</p>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721
----------	-------

제안년월일 : 2021. 10. 2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 □ 수정이유

- 안 제15조의3 조문의 제명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의장은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 (안 제15조의3제1항)